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9. 2. 이민석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20. 9. 3.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 9.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정혜경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비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2)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안 제5조)

- 3)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4)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7조~안 제8조)
- 5) 사무의 위탁(안 제9조)

3. 검토보고 (조광현 전문위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인가구도 가정으로 정의됨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공동체를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함께하도록 그 기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 사업 내용, 안 제8조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최근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의 증가, 가족해체 등 가구 구성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2019년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대비 29.3%이며, 마포구의 1인가구 또한 36.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오피스텔 등 1인 주거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원가족과의 관계유지 소통 및 생활역량에 대한 건강한 독립 가구로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고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본 조례안 제정으로 마포구 거주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적 가족도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참여도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우수한 정책 발굴과 시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표] 마포구 1인가구 현황¹⁾

연 도	전체 가구수	1인 가구수	1인가구 비율(%)	비고
2015	159,636	52,437	32.8	
2016	158,474	53,382	33.7	
2017	157,877	54,162	34.3	
2018	159,850	56,837	35.6	
2019	162,161	59,248	36.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1)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년~2019년)